

의안번호	2212832
의 퇴 인	윤종균의원
회 답 일	2025.11.7.
추 계 번호	25D4945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의 보증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2027년 1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억원 (연평균 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(안 제29조의2)	100	100	100	100	100	500	100

주: 본 추계는 이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현황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할 재정수입 감소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2 (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)	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9조의2 (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 업무 수행을 위해 전입세대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므로 기존에 주택 소유자, 임차인 등이 발급할 때 발생하게 되는 전체 수수료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심사 시 타 세대 전입내역·선순위 전세계약 유무 확인 및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상 대항력 구비 여부 확인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250,100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시행한 바 있음

[표 2]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

(단위: 건수)

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179,374	232,150	237,797	314,456	286,722	250,100

자료: 주택도시보증공사
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위한 평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건수에 발급 수수료를 곱하여 산출함
 - 최근 5년간 평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건수는 250,100건
 - － 추계기간 동안 전입세대확인서 발급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발급건수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
 -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7조1)에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건당 400원으로 정하고 있음

1) 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17조(수수료) ①~③ (생략)

④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·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,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·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2.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.

- 추계 결과, 개정안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의 보증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2027년 1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억원(연평균 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2027~2031년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창구 발급	건수 (천건, a)	250	250	250	250	250	-
	수수료 (원, b)	400	400	400	400	400	-
	계 (천원, c=a×b)	100,040	100,040	100,040	100,040	100,040	500,2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이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현황 등을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발생할 재정수입 감소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